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3-18호
2023. 3. 31.(금)

차 례

고 시(2)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고시(고시 제2023-33호)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3-34호) 10

공 고(4)

- 비래동 제1공영주차장 외 4개소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3-367호) 11
- 도시계획시설(효심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문(공고 제2023-374호) 14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382호) 17
- 2022년 대덕구 재난관리 실태 공고(공고 제2023-385호) 20

입법예고(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360호) 4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363호) 5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364호) 5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365호) 6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채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372호) 70

차 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373호) 7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376호) 8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377호) 1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378호) 136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380호) 141

공 람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고시

2023. 3.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붙임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회계별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	
총 계	551,626,375	528,302,000	23,324,375	4.41%	
일 반 회 계	546,630,823	523,350,000	23,280,823	4.45%	
기 타 특 별 회 계	4,995,552	4,952,000	43,552	0.8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600	26,600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680,227	680,227	0	0.00%	
수 질 개 선	938,838	927,686	11,152	1.20%	
지 하 수 관 리	153,120	153,120	0	0.00%	
주 차 장	3,196,767	3,164,367	32,400	1.02%	

별 반 회 계

○ 세 입

(단위:천원)

장·관·항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46,630,823	100.00%	523,350,000	100.00%	23,280,823	4.45%
100 지방세수입	61,100,000	11.18%	61,100,000	11.67%	0	0.00%
110 지방세	61,100,000	11.18%	61,100,000	11.67%	0	0.00%
111 보통세	60,800,000	11.12%	60,800,000	11.62%	0	0.00%
113 지난년도수입	300,000	0.05%	300,000	0.06%	0	0.00%
200 세외수입	14,737,600	2.70%	14,342,379	2.74%	395,221	2.76%
210 경상직세외수입	11,196,325	2.05%	10,904,383	2.08%	291,942	2.68%
211 재산임대수입	295,176	0.05%	133,417	0.03%	161,759	121.24%
212 사용료수입	1,249,137	0.23%	1,119,137	0.21%	130,000	11.62%
213 수수료수입	4,783,704	0.88%	4,783,704	0.91%	0	0.00%
215 정수교부금수입	3,816,153	0.70%	3,816,153	0.73%	0	0.00%
216 이자수입	1,052,155	0.19%	1,051,972	0.20%	183	0.02%
220 임시직세외수입	2,661,653	0.49%	2,558,374	0.49%	103,279	4.04%
221 재산매각수입	102,000	0.02%	102,000	0.02%	0	0.00%
223 보조금반환수입	34,623	0.01%	0	0.00%	34,623	순증
224 기타수입	2,025,030	0.37%	1,956,374	0.37%	68,656	3.51%
225 지난년도수입	500,000	0.09%	500,000	0.10%	0	0.00%
230 지방행정경제·부과금	879,622	0.16%	879,622	0.17%	0	0.00%
231 과징금	64,710	0.01%	64,710	0.01%	0	0.00%
232 이행강제금	101,000	0.02%	101,000	0.02%	0	0.00%
233 변상금	17,000	0.00%	17,000	0.00%	0	0.00%
234 과태료	313,429	0.06%	313,429	0.06%	0	0.00%
236 부담금	360,483	0.07%	360,483	0.07%	0	0.00%
237 벌칙금	23,000	0.00%	23,000	0.00%	0	0.00%
300 지방교부세	32,915,000	6.02%	31,600,000	6.04%	1,315,000	4.16%
310 지방교부세	31,315,000	5.73%	30,000,000	5.73%	1,315,000	4.38%
311 지방교부세	31,315,000	5.73%	30,000,000	5.73%	1,315,000	4.38%
320 지방소멸대응기금	1,600,000	0.29%	1,600,000	0.31%	0	0.00%
321 지방소멸대응기금	1,600,000	0.29%	1,600,000	0.31%	0	0.00%
400 조정교부금등	68,335,000	12.50%	59,253,000	11.32%	9,082,000	15.33%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68,335,000	12.50%	59,253,000	11.32%	9,082,000	15.33%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68,335,000	12.50%	59,253,000	11.32%	9,082,000	15.33%

(단위:천원)

장·관·항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500 보조금	348,526,908	63.76%	336,269,469	64.25%	12,257,439	3.63%
510 국고보조금등	212,826,386	38.93%	211,076,043	40.33%	1,750,343	0.83%
511 국고보조금등	212,826,386	38.93%	211,076,043	40.33%	1,750,343	0.83%
520 시·도비보조금등	135,700,522	24.82%	125,193,426	23.92%	10,507,096	8.39%
521 시·도비보조금등	135,700,522	24.82%	125,193,426	23.92%	10,507,096	8.39%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016,315	3.84%	20,785,152	3.97%	231,163	1.11%
710 보전수입등	20,786,315	3.80%	20,785,152	3.97%	1,163	0.01%
711 잉여금	20,785,152	3.80%	20,785,152	3.97%	0	0.00%
712 전년도이월금	888	0.00%	0	0.00%	888	순증
715 보조금등반환금	275	0.00%	0	0.00%	275	순증
720 내부거래	230,000	0.04%	0	0.00%	230,000	순증
721 전입금	230,000	0.04%	0	0.00%	230,000	순증

○ 세 출(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46,630,823	100.00 %	523,350,000	100.00 %	23,280,823	4.45 %
010 일반공공행정	19,516,038	3.57 %	18,047,733	3.45 %	1,468,305	8.14 %
011 입법및선거관리	912,399	0.17 %	902,399	0.17 %	10,000	1.11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1,181,275	0.22 %	1,181,275	0.23 %	0	0.00 %
016 일반행정	17,422,364	3.19 %	15,964,059	3.05 %	1,458,305	9.13 %
020 공공질서및안전	1,598,396	0.29 %	1,565,234	0.30 %	33,162	2.12 %
025 재난방재·민방위	1,598,396	0.29 %	1,565,234	0.30 %	33,162	2.12 %
050 교육	3,243,157	0.59 %	2,851,722	0.54 %	391,435	13.73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2,876,694	0.53 %	2,620,259	0.50 %	256,435	9.79 %
053 평생·직업교육	366,463	0.07 %	231,463	0.04 %	135,000	58.32 %
060 문화및관광	9,828,417	1.80 %	8,139,057	1.56 %	1,689,360	20.76 %
061 문화예술	4,570,697	0.84 %	3,927,192	0.75 %	643,505	16.39 %
062 관광	587,315	0.11 %	587,315	0.11 %	0	0.00 %
063 체육	3,907,725	0.71 %	2,880,725	0.55 %	1,027,000	35.65 %
064 문화재	762,680	0.14 %	743,825	0.14 %	18,855	2.53 %
070 환경	17,821,899	3.26 %	18,035,374	3.45 %	△213,475	△1.18 %
071 상하수도·수질	253,134	0.05 %	253,134	0.05 %	0	0.00 %
072 폐기물	16,394,556	3.00 %	16,638,154	3.18 %	△243,598	△1.46 %
073 대기	682,271	0.12 %	682,271	0.13 %	0	0.00 %
076 환경보호일반	491,938	0.09 %	461,815	0.09 %	30,123	6.52 %
080 사회복지	325,279,491	59.51 %	321,570,575	61.44 %	3,708,916	1.15 %
081 기초생활보장	57,374,106	10.50 %	55,925,683	10.69 %	1,448,423	2.59 %
082 취약계층지원	76,991,600	14.08 %	76,544,341	14.63 %	447,259	0.58 %
084 보육·가족및여성	63,448,117	11.61 %	63,231,356	12.08 %	216,761	0.34 %
085 노인·청소년	109,143,300	19.97 %	107,708,648	20.58 %	1,434,652	1.33 %
086 노동	4,849,820	0.89 %	4,847,957	0.93 %	1,863	0.04 %
087 보훈	2,503,740	0.46 %	2,501,740	0.48 %	2,000	0.08 %
089 사회복지일반	10,968,808	2.01 %	10,810,850	2.07 %	157,958	1.46 %
090 보건	10,021,050	1.83 %	9,899,123	1.89 %	121,927	1.23 %
091 보건의료	9,323,826	1.71 %	9,251,899	1.77 %	71,927	0.78 %
093 식품의약품안전	697,224	0.13 %	647,224	0.12 %	50,000	7.73 %
100 농림해양수산	9,842,646	1.80 %	9,574,966	1.83 %	267,680	2.80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01 농업·농촌	2,953,628	0.54 %	2,770,869	0.53 %	182,759	6.60 %
102 임업·산촌	6,889,018	1.26 %	6,804,097	1.30 %	84,921	1.25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73,575	2.10 %	10,197,174	1.95 %	1,276,401	12.52 %
114 산업진흥·고도화	6,983,618	1.28 %	5,708,117	1.09 %	1,275,501	22.35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4,489,957	0.82 %	4,489,057	0.86 %	900	0.02 %
120 교통및물류	27,171,387	4.97 %	17,527,133	3.35 %	9,644,254	55.02 %
121 도로	7,175,083	1.31 %	5,373,283	1.03 %	1,801,800	33.53 %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9,996,304	3.66 %	12,153,850	2.32 %	7,842,454	64.53 %
140 국토및지역개발	22,790,855	4.17 %	18,861,250	3.60 %	3,929,605	20.83 %
141 수자원	2,629,017	0.48 %	1,758,057	0.34 %	870,960	49.54 %
142 지역및도시	20,161,838	3.69 %	17,103,193	3.27 %	3,058,645	17.88 %
150 과학기술	135,768	0.02 %	135,768	0.03 %	0	0.00 %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35,768	0.02 %	135,768	0.03 %	0	0.00 %
160 예비비	4,954,583	0.91 %	4,954,583	0.95 %	0	0.00 %
161 예비비	4,954,583	0.91 %	4,954,583	0.95 %	0	0.00 %
900 기타	82,953,561	15.18 %	81,990,308	15.67 %	963,253	1.17 %
901 기타	82,953,561	15.18 %	81,990,308	15.67 %	963,253	1.17 %

수질 개선 특별회계

○ 세 입

(단위:천원)

장·관·항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 계	938,838	100.00%	927,686	100.00%	11,152	1.20%
200 세외수입	1,627	0.17%	1,565	0.17%	62	3.96%
210 경상적세외수입	1,627	0.17%	1,565	0.17%	62	3.96%
216 이자수입	1,627	0.17%	1,565	0.17%	62	3.96%
500 보조금	916,121	97.58%	916,121	98.75%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916,121	97.58%	916,121	98.75%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916,121	97.58%	916,121	98.75%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090	2.25%	10,000	1.08%	11,090	110.90%
710 보전수입등	11,090	1.18%	0	0.00%	11,090	순증
715 보조금등반환금	11,090	1.18%	0	0.00%	11,090	순증
720 내부거래	10,000	1.07%	10,000	1.08%	0	0.00%
721 전입금	10,000	1.07%	10,000	1.08%	0	0.00%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 계	938,838	100.00 %	927,686	100.00 %	11,152	1.20 %
140 국토및지역개발	800,388	85.25 %	789,236	85.08 %	11,152	1.41 %
141 수자원	789,236	84.07 %	789,236	85.08 %	0	0.00 %
142 지역및도시	11,152	1.19 %	0	0.00 %	11,152	순증
900 기타	138,450	14.75 %	138,450	14.92 %	0	0.00 %
901 기타	138,450	14.75 %	138,450	14.92 %	0	0.00 %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 세 입

(단위:천원)

장·관·항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 계	153,120	100.00%	153,120	100.00%	0	0.00%
200 세외수입	103,120	67.35%	103,120	67.35%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20	0.08%	120	0.08%	0	0.00%
216 이자수입	120	0.08%	120	0.08%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3,000	1.96%	3,000	1.96%	0	0.00%
225 지난해도수입	3,000	1.96%	3,000	1.96%	0	0.00%
230 지방행정체제·부과금	100,000	65.31%	100,000	65.31%	0	0.00%
236 부담금	100,000	65.31%	100,000	65.31%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000	32.65%	50,000	32.65%	0	0.00%
710 보전수입등	50,000	32.65%	50,000	32.65%	0	0.00%
711 잉여금	50,000	32.65%	50,000	32.65%	0	0.00%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 계	153,120	100.00 %	153,120	100.00 %	0	0.00 %
070 환경	26,909	17.57 %	26,909	17.57 %	0	0.00 %
071 상하수도·수질	26,909	17.57 %	26,909	17.57 %	0	0.00 %
120 교통및물류	76,294	49.83 %	79,810	52.12 %	△3,516	△4.41 %
121 도로	76,294	49.83 %	79,810	52.12 %	△3,516	△4.41 %
900 기타	49,917	32.60 %	46,401	30.30 %	3,516	7.58 %
901 기타	49,917	32.60 %	46,401	30.30 %	3,516	7.58 %

주 차 장 특 별 회 계

○ 세 입

(단위:천원)

장·관·항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196,767	100.00%	3,164,367	100.00%	32,400	1.02%
200 세외수입	1,302,603	40.75%	1,296,653	40.98%	5,950	0.46%
210 경상적세외수입	120,073	3.76%	120,073	3.79%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15,073	3.60%	115,073	3.64%	0	0.00%
216 이자수입	5,000	0.16%	5,000	0.16%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26,000	7.07%	220,050	6.95%	5,950	2.70%
224 기타수입	6,000	0.19%	50	0.00%	5,950	11900.00%
225 지난해도수입	220,000	6.88%	220,000	6.95%	0	0.00%
23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956,530	29.92%	956,530	30.23%	0	0.00%
234 과태료	900,000	28.15%	900,000	28.44%	0	0.00%
236 부담금	56,530	1.77%	56,530	1.79%	0	0.00%
500 보조금	1,641,000	51.33%	1,641,000	51.86%	0	0.00%
520 시·도비보조금등	1,641,000	51.33%	1,641,000	51.86%	0	0.00%
521 시·도비보조금등	1,641,000	51.33%	1,641,000	51.86%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3,164	7.92%	226,714	7.16%	26,450	11.67%
710 보전수입등	253,164	7.92%	226,714	7.16%	26,450	11.67%
711 잉여금	253,164	7.92%	226,714	7.16%	26,450	11.67%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196,767	100.00 %	3,164,367	100.00 %	32,400	1.02 %
120 교통및물류	2,844,060	88.97 %	2,809,260	88.78 %	34,800	1.24 %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2,844,060	88.97 %	2,809,260	88.78 %	34,800	1.24 %
900 기타	352,707	11.03 %	355,107	11.22 %	△2,400	△0.68 %
901 기타	352,707	11.03 %	355,107	11.22 %	△2,400	△0.6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3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오정동 337-3	오정로51번길 28-12	2023. 3. 31.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5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연축동 3	신탄진로162번길 195-15	2023. 3. 31.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6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석봉동 179-35	석봉로44번길 35-5	2023. 3. 31.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4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덕암동 11-1	덕암북로60번길 21	2023. 3. 31.	건물신축	덕암북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6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042-608-5306)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비래동 제1공영주차장 외 4개소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비래동 제1공영주차장 외 4개소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비래동 제1공영주차장 외 4개소 유료화 운영
2. 행정예고 목적 : 비래동 제1공영주차장 외 4개소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3. 예고대상

주차장명	위 치	면 수	비 고
비래동 제1공영주차장	비래동 143-7	25	08시~22시(14시간) 유료 운영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개방)
비래동로31번길공영주차장	비래동 128-4	10	
비래동로23번길공영주차장	비래동 128-10	26	
읍내어울림공영주차장	읍내동 575-5	35	
송촌대양공영주차장	송촌동 487-1	29	

※ 시행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운영방법 : 민간 위탁관리
5. 유료화 운영시기 : 2023년 5월(예정)

※ 시행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차요금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4조

구 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 10분 기준)	1 일 주차권	정기주차권 (월)
	최초 10분	10분초과후 매10분 이내			
4급지	100	100	200	2,400	43,000

7. 공고방법 : 대덕구청 홈페이지(www.daedeok.go.kr)
8.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9.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3. 31. ~ 2023. 4. 21. / 22일간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20)

※ 토·일·공휴일은 대덕구 당직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메일 (FAX: 042-608-3845, 메일: vlfwpdi@korea.kr)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참조)

마. 제출기일: 2023. 3. 31.(금) ~ 2023. 4. 21.(금)

바.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공영주차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홈페이지 참조)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2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374호

도시계획시설(효심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열람공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05-5번지(효심어린이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세부)는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23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05-5번지 (효심어린이공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효심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효심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다. 사업 시행자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오정동)

라.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규 모 : 공원정비 및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1식 등

- 공원면적 : 1,507.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3.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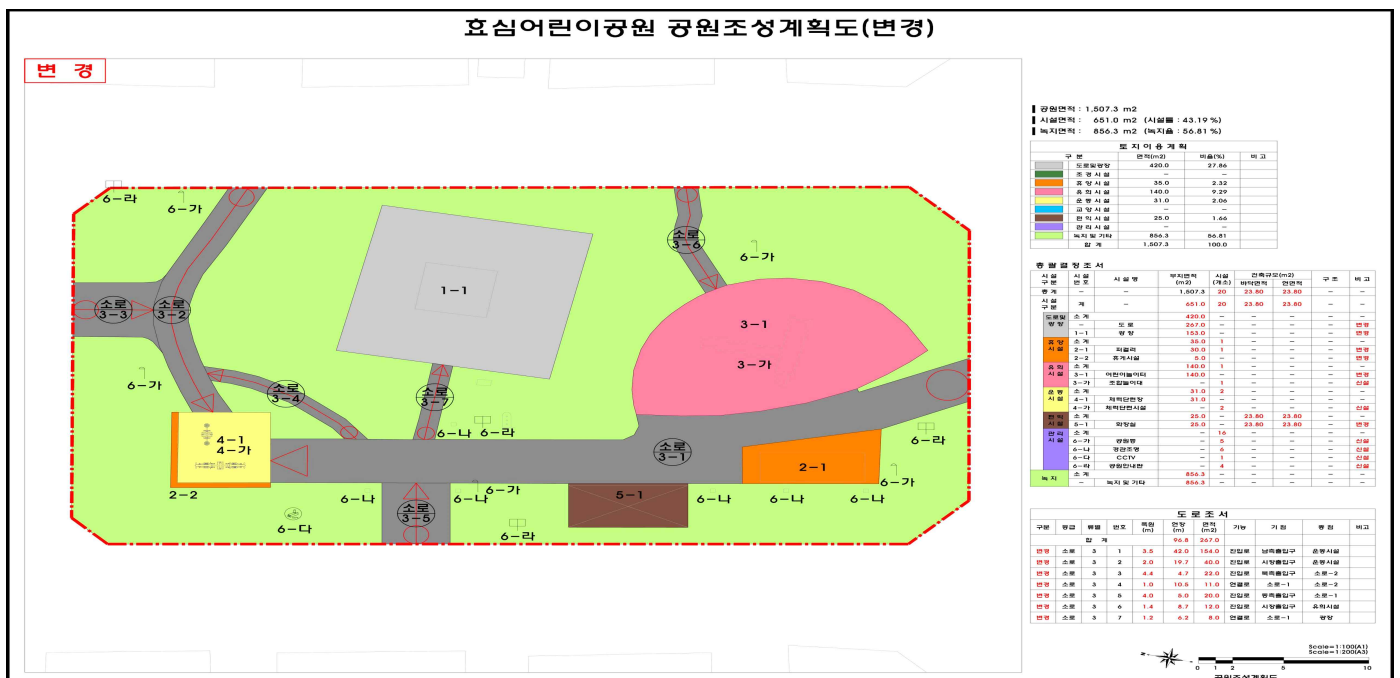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권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507.3	1,507.3	-	-	-	-
1	병동	205-5	공	1,507.3	1,507.3	대전 대덕구	-	-	-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 042-608-5113)

자. 관계도면

1) 공원조성계획 총괄도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 2023-31호(2023. 03. 24.) 끝.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 말소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공고기간 : 2023. 3. 31. ~ 2023. 4. 14.(14일간)
- 공고장소 : 대덕구 공보,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송달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처분의 원인된 사실	해당 대지 내 건축물 해체·멸실					
다.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건축물대장말소)	위치	소유자	층수	구조	용도	면적
	장동139-1, 139-2	최순규	지상1층	세멘트벽	주택, 부속	93.79㎡
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유의사항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축과

○ 연 락 처 : 042)608-5382, 모사전송(FAX) 042)608-384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385호

2022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과 관련된 전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전년도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사유시설(주택, 농림시설 등)의 피해가 있었으며 총 9백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안전총괄과 14명으로 전년대비 1명 증가했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8종으로 96개소에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보다 16개소 증가하였고, 지난해와 같습니다.
 - 방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교육은 재난안전관련 39개 분야 42명이 교육과정을 이수 하였습니다.

- 안전관리계획 및 정책의 총괄·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종합상황실이 운영하고 있으며, 25개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 45억 원의 재난방지시설 예산을 확보하였고 도로시설유지보수공사, 소화천 정비공사 공사 등 13개 재난방지시설 정비 사업을 하였습니다.
- 하천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오일웬스 등 6종류의 환경방재 물자가 있으며 호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방자재는 마대 등 6종류의 방재물자가 있습니다.
- 의료시설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12개의 병원에 2,161개의 병상과 137명의 의사 및 559명의 간호사가 있으며,
- 학교, 마을회관 등 재난 발생시 주민을 대피·수용할 수 있는 29개의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 복구장비 크레인, 굴삭기 등 8종류, 산불진화장비 산불진화 차, 펌프 등 9종류 등 1,271개를 지정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술 인력은 건축·토목 등 11개 분야 90명, 기능 인력은 전기·기계 등 12개 분야 102명이 있으며,
- 의용소방대·적십자봉사대 등 7개의 특수단체·자원봉사단체 2,298명이 있습니다.
- 안전한국훈련은 한솔제지 공장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505백만원으로 505백만원 확보되어 100 % 확보되었습니다.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지수는 0.49로 D등급입니다.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68개 시설 중 42개 시설이 내진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61%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금년도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5건 1,515백만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구의 재난관리 역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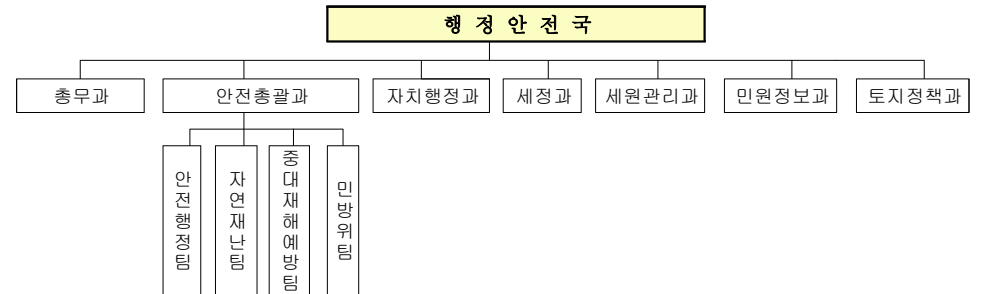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2022.8.8. ~ 2022.8.17.	집중호우	주택침수 2건/농작물피해 7건	재난지원금 6,800,000원	지급 완료
2022.9.3. ~ 2022.9.7.	태풍(힌남노)	농작물피해 2건/임산물 피해 8건	재난지원금 2,200,000원	지급 완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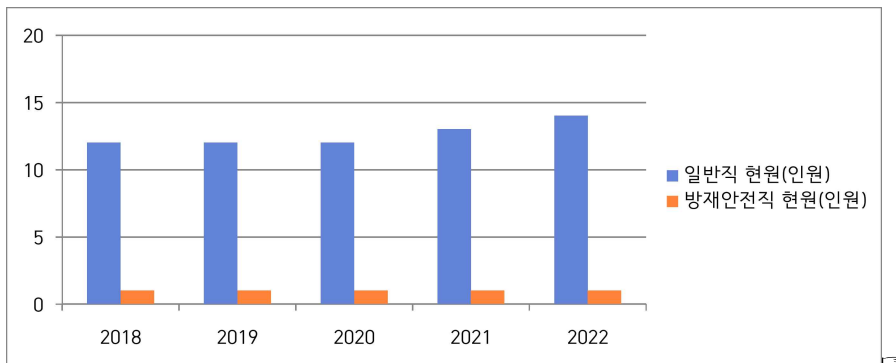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4	14	1	4	4	4	4	0	
	현원	14	14	1	4	4	4	2	2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일 반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	1	-	-	-	1	-	-
	현원	1	1	-	-	-	1	-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직 현원(인원) * 방재안전직 포함	12	12	12	13	14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1	1	1	1	1



방재안전직의 인원은 전년도와 비교 증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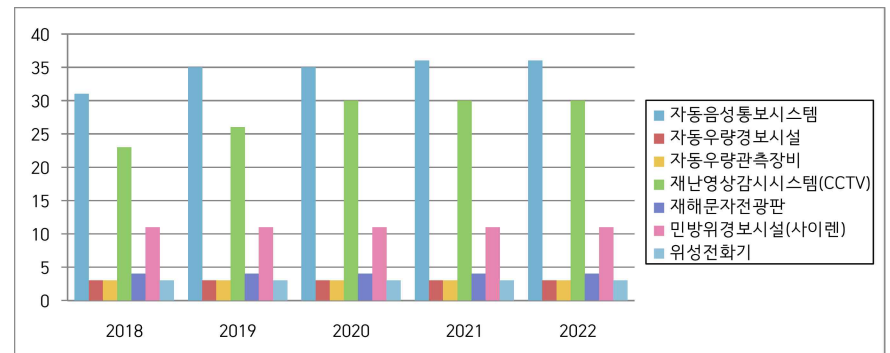
②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가. 현황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6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등
자동우량경보시설	3	구청 옥상, 회덕동, 신탄진동
자동우량관측장비	3	구청 옥상, 회덕동, 신탄진동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30	한밭대교, 로하스캠핑장 등
재해문자전광판	4	오정동, 현도교, 법동소류지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1	구청, 오정동행정복지센터 등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3	구청 재난안전상황실
위성전화기	6	구청 재난안전상황실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1	35	35	36	36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3	3	3
자동우량관측장비	3	3	3	3	3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23	26	30	30	30
재해문자전광판	4	4	4	4	4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1	11	11	11	11
위성전화기	3	3	3	3	3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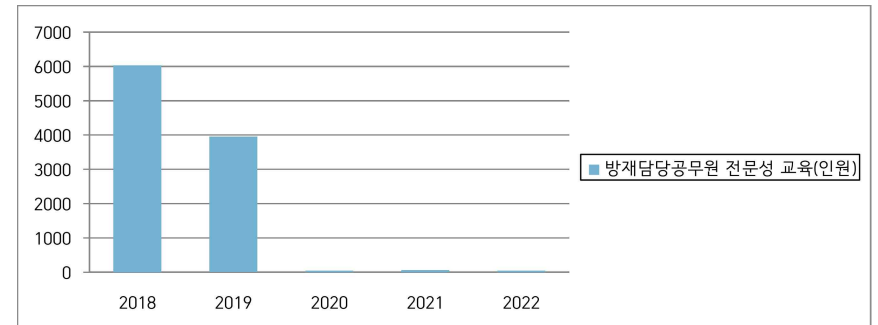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재난안전신규실무자과정 1기	01.25~01.27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신규실무자과정 2기	02.03~02.0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지진재난대비과정 1기	02.17~02.19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구호심리과정 1기	02.22~02.2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안전책임관 재난안전 전문교육 1기	03.0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신규실무자과정 3기	03.17~03.19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매뉴얼(폭염) 1기	03.02~03.03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저수지, 댐 안전관리 1기	03.22~03.2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다중이용시설 1기	03.29~03.3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신규실무자과정 5기	04.19~04.2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재난관리자원의 운용 및 공동 활용과정 4기	05.12~05.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현장통합 자원봉사단과정 2기	05.17~05.18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안전점검실무과정 3기	06.07~06.09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풍수해 담당자 교육	06.17	행정안전부	17	
재난안전신규실무자과정 10기	08.09~08.1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신규실무자과정 11기	09.15~09.17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5	
재해영향평가과정 3기	09.08~09.1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자연재난대응과정 3기	09.13~09.1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설계과정 2기	09.06~09.08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해복구실무과정 4기	10.14~10.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기후재난대응과정 2기	11.08~11.09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가스·전력분야 재난대응 市·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합동 토 론훈련	11.14	대전광역시	10	
재난안전신규실무자과정 14기	12.01~12.03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2022년 재난대비 상시훈련 (항공기사고)	12.15	대전광역시	6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6,026	3,947	41	61	42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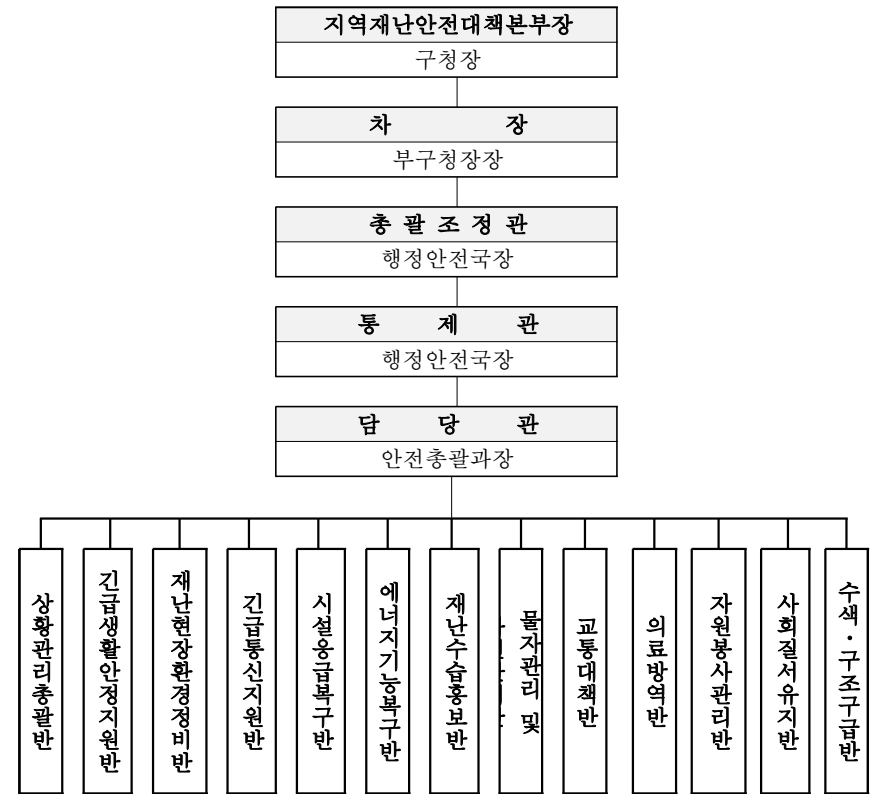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분	근거	구성	기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 위원 : 2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 •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 : 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원 : 2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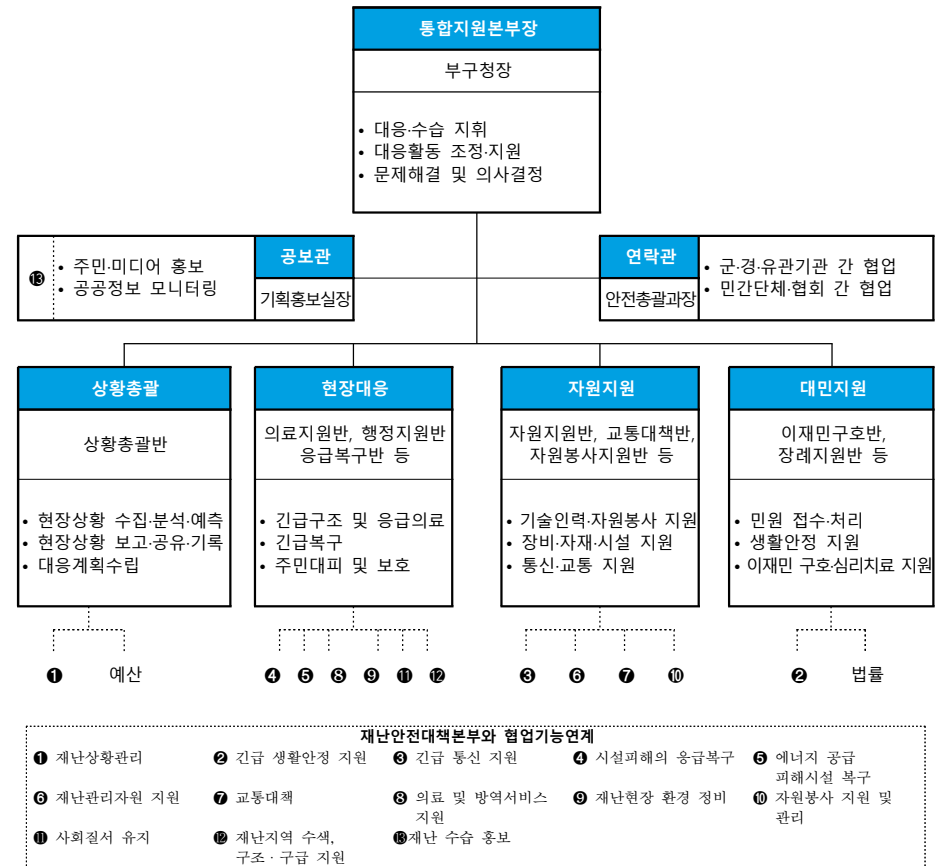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총괄과)
 -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복지정책과)
 -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환경과)
 -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자치행정과)
 -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과)
 -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에너지산업과)
 -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기획홍보실)
 -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 (안전총괄과)
 -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과)
 -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대덕구 보건소, 위생과)
 -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복지정책과, 가족친화과)
 -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대덕경찰서, 민원정보과)
 -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대덕소방서, 공원녹지과)
 -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나)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임무 및 역할
안전총괄과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운영지원과 총무과	○ 구조·구급을 제외한 재난수습 및 복구 활동 총괄 지휘 ○ 각종 여론 수집 및 민심동향, 민원사항 처리
기획홍보실	○ 직원 비상소집 및 복무관리, 합동분향소 설치 ○ 공보지원반 구성·운영 / 재난대응 공보 전담팀 가동
건설과/건축과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붕괴 잔해물 철거작업 일정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 수거처리
교 통 과	○ 사고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 이동 조치 ○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 임시보관소 설치 견인 및 관리
한국도로공사	○ 상급기관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대덕구보건소	○ 재난복구장비(건설 중기 등) 지원 ○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사상자 조치(환자분류 → 응급처치 → 후송치료)

대덕소방서	○ 긴급 구조 통제 단 구성·운영 ○ 긴급구조관련기간의 긴급 구조 활동 통합·조정
대덕경찰서	○ 도로통제, 우회도로 확보 등 교통대책 ○ 사상자 신원확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초동수사
육군1123부대	○ 인명구조 활동 지원(인력, 장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붕괴로 인한 전기설비의 안정성 확보 및 복구
KT용전,신탄진지사	○ 통신 시설 복구 인력 및 장비 현장투입 복구 시행
대덕구자원봉사센터	○ 재난안전 긴급자원봉사단 구성(모집)·운영 ○ 통합지휘소 현장지휘관 지휘 하에 분야별 자원봉사자 배치 및 활동관리
대한적십자사	○ 재난피해자 긴급구호 봉사활동 ○ 긴급구조 지원활동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안전 지원활동 전개 ○ 심리안전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운영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	○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 상황파악 ○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규정	2004. 12. 31.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 대덕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04. 12. 31.	
대덕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규정	○ 대덕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5. 01. 14.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5. 02. 04.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5. 02. 11.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5. 05. 06.	
대덕구 재난 예·경보 운영 규정	◦ 대덕구 재난 예보·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6. 06. 23.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7. 02. 16.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 지역자율방재단 임원구성 및 활동지원, 교육, 훈련 등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8. 05. 23.	
대덕구 안전도시조례	◦ 구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9. 12. 09.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 지진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2. 12. 07.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 대덕구 통합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4. 02. 07.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5. 11. 20.	
대덕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7. 07. 07.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비용을 지급기준 규정	2018. 02. 02.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8. 10. 01.	
대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대덕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9. 06. 21.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9. 10. 18.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9. 10. 18.	
대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019. 12. 20.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9. 12. 20.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20. 06. 19.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0. 06. 19.	
대덕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사항 규정	2022. 12. 16.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당없음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상용호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용호동 212-2번지 일원	하수관로 신설 L=2.0km	2021. 07. ~2022. 07.	869	재해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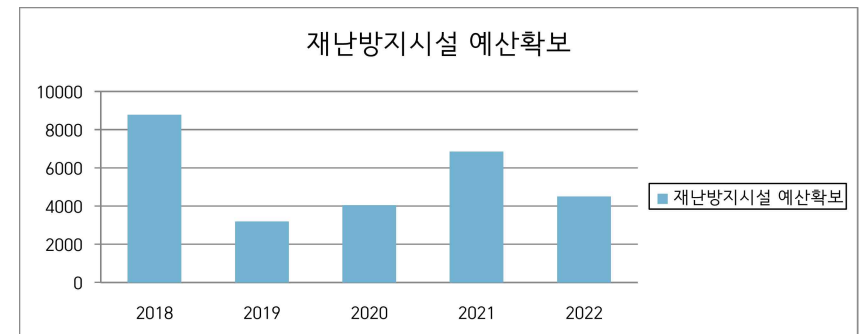
신탄진로756 번안길 하수관로 설치공사	신탄진로756 번안길 90일원	하수암거 H1.0m x W1.2m L=170m	2021. 04. ~2022. 03.	385	재해예방
송촌체육공원 일원 외 1개소 하수관로 준설공사	송촌동 511, 오정동 485-1번지 일원	하수박스(2.5 X 2.0m, 3.0 X 1.8m) 준설 V=1,450m ³	2022. 01. ~2022. 06.	230	재해예방
신탄진북로 일원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대덕구 신탄진동 135-21, 신탄진동 152-15번지 일원	하수관로 (D1,000mm) 및 하수박스(2.0x 1.5m)정비 L=350m	2022. 01. ~2022. 12.	500	재해예방
중리남로40번 길 일원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리동 167-1, 중리동 203-6번지 일원	하수관로(D30 0~450mm) 정비 L=345m	2022. 01. ~2022. 06.	290	재해예방
대덕대로1454 번길 일원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목상동 174, 목상동 185-3번지 일원	하수관로(D30 0~450mm) 정비 L=235m	2022. 01. ~2022. 06.	200	재해예방
다사랑 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목상동 185-1번지 일원	우수관로(D30 0mm) 정비 L=200m	2022. 01. ~2022. 06.	100	재해예방
오정로63번길 일원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오정동 333-16, 오정동 339-16일원	우수관로(D50 0mm) 정비 L=150m	2022. 01. ~2022. 06.	140	재해예방
대전로1158 번길 일원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오정동 390-2, 오정동 431-14 번지 일원	우수관로(D500 mm) 정비 L=16 0m	2022. 01. ~ 2022. 06.	149	재해예방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관내 일원 (오정동외 11 개소)	긴급보수 120 개소 준설 720톤	2022. 02. ~ 2022. 12.	1,000	재해예방
배오개천 정비사업	이현동 168-1 번지 일원	제방정비 L=125m(양안)	2022. 06. ~ 2021. 12.	354	재해예방
도로 침수대 비 배수시설 개량 및 정비 공사	오정동 708 번지 일원	연속형 배수로 L=220m 빗물받이 122 개소 교체 콘크리트 타설 26m ³	2022. 06. ~ 2022. 09.	94	재해예방
사방사업(계 류보전사업)	장동 산64-4 번지 일원	사방(계류보 전)사업 1km	2022. 01. ~ 2022. 06.	193	재해예방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8,783	3,185	4,050	6,853	4,504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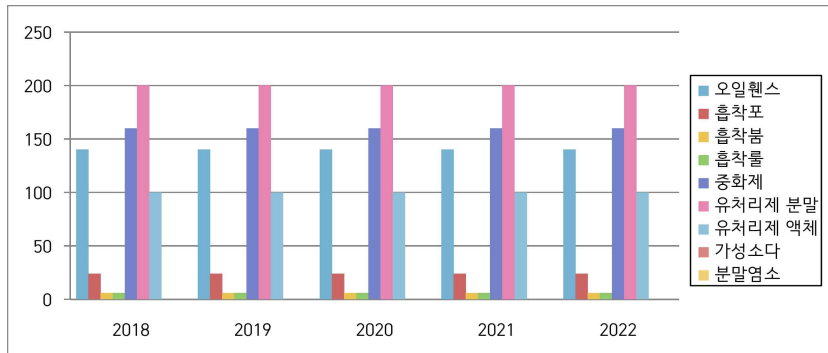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웬스 m	흡착제 (box)			중화제 kl	유처리제		가성 소다 ton	분말 염소 ton
			흡착 포	흡착 분	흡착 물		분말	액체		
총계	636	140	24	6	6	160	200	100	0	0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636	636	636	636	636
오일웬스(m)	140	140	140	140	140
흡착포(box)	24	24	24	24	24
흡착분(box)	6	6	6	6	6
흡착물(box)	6	6	6	6	6
중화제(kl)	160	160	160	160	160
유처리제 분말(kg)	200	200	200	200	200
유처리제 액체(l)	100	100	100	100	100
가성소다(ton)	0	0	0	0	0
분말염소(ton)	0	0	0	0	0



유류유출사고 등과 같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 추가 확보 하지 않음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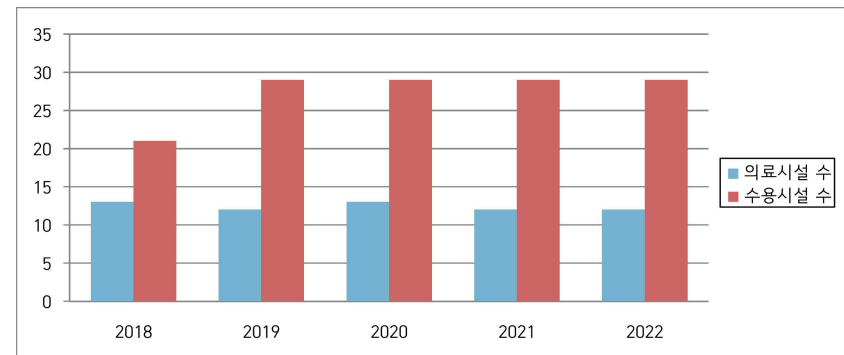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계	12	137	559	13	2,161	2
병원	11	135	536	11	2,161	2
보건소	1	2	23	2	0	0

[수용시설]

구분	합계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29	7,644	14	4,522	1	200	5	208	7	2,623	2	91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료시설수	13	12	13	12	12
수용시설	개소	21	29	29	29
	수용인원	9,255	9,872	7,644	7,644



나. 장비 지정

[구조장비]

구분	계	사다리차	구조작차	배연차	헬기	매물차 터짐기	구조용 로프	구명보트	구명환	구명동	산소흡기	잠수세트	유압잭	에어백	기타
총계	157	1	1	1	0	2	40	5	0	85	3	10	6	1	7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집계차	굴삭기	덤프트트럭	그레이더	견인차	청소차	분노수거차	기타
총계	77	0	0	1	2	0	3	1	6	64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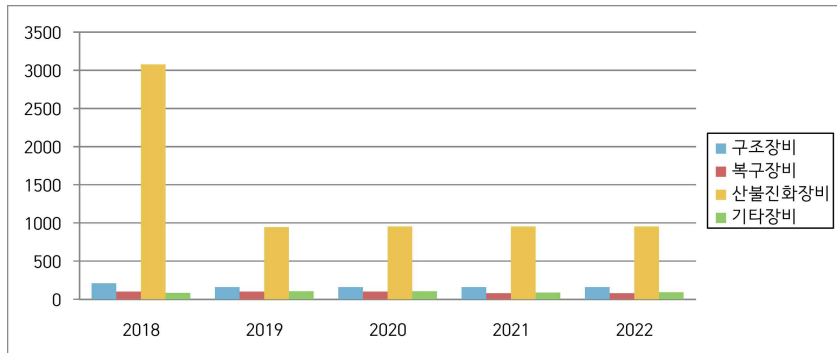
구분	계	헬기 보유	헬기 임차	산불 진화차	동력펌프	진화 도구	기타
총계	951	-	-	3	4	314	630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컴프레서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절단기	화학차	전기복구차	가스복구차	통신복구차	제독차	기타
총계	86	5	1	48	5	0	0	9	0	3	1	1	0	13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구조장비	207	157	157	157	157
복구장비	99	99	99	77	77
산불진화장비	3,074	946	951	951	951
기타장비	81	102	102	86	91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항공	방사능	삭제도	유기장	기타
인원	90	16	19	4	18	7	12	4	3	0	0	7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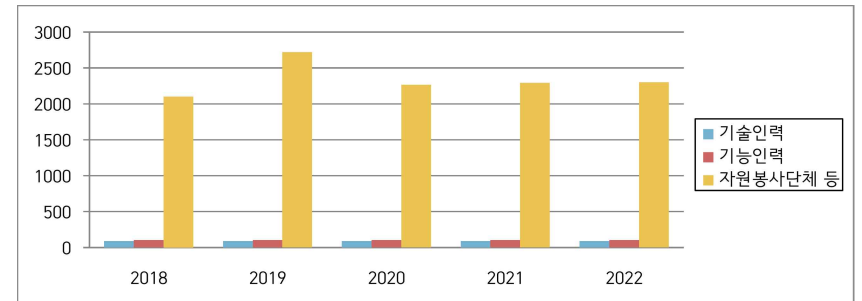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전	중기정비	배관공	수강판현장관리	기타
인원	102	8	6	13	0	0	16	0	33	5	6	0	15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아마추어우선봉사대	기타	적십자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단위의 기타
인원	2,298	220	35	-	-	-	334	213	116	402	978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술인력	90	90	90	90	90
기능인력	102	102	102	102	102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2,101	2,717	2,263	2,289	2,298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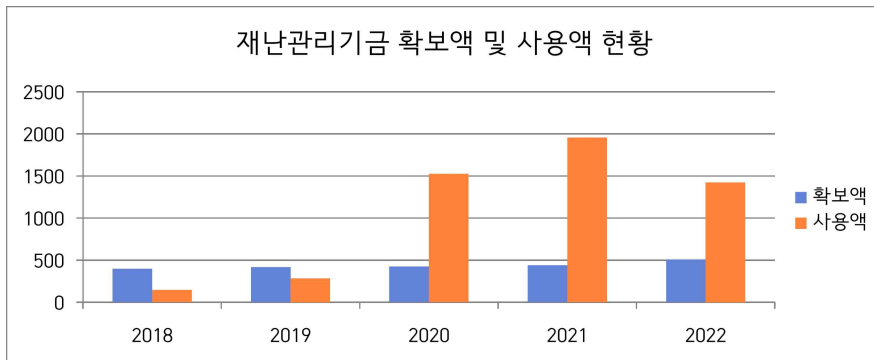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505백만원	505백만원	100%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718백만원	718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확보액 (당해연도)		394	413	422	437	505
사 용 액	합 계	143	283	1,524	1,953	1,422
	공공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9	40	1,334	1,776	1,334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134	243	190	177	88
	민간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0	0	0	0	0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0	0	0	0	0	



◆ 민간분야에 기금을 활용한 사업별 내역(당해 연도에 한함)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효과	예산내역
				해당사항 없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통합본	안전총괄과	2017. 5.	행동매뉴얼 통합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5. 1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시 상황대처 및 수습
항공기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 통 과	2014. 5.	항공기 사고발생 상황대처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자리경제과	2007. 11.	가축 전염병 발병에 따른 상황대처 및 수습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행정과	2014. 3.	보건의료분야 사고 수습대응 조치
고속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 통 과	2014. 4.	고속철도 대상사고 수습 조치
대규모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기후환경과	2014. 2.	대규모 수질오염발생에 따른 상황대처 및 수습
전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에너지과학과	2014. 5.	전력 공급중단 등에 따른 상황대처 및 수습
가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에너지과학과	2014. 5.	가스의 공급자질에 대한 상황대처 및 수습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09. 10.	댐붕괴 사고 발생 상황대처 및 수습조치
가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5. 12.	가뭄재난 발생시 현장대응 및 수습
문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문화관광체육과	2014. 4.	상황보고, 긴급출동, 응급조치, 수습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공원녹지과	2019. 12.	산사태 재난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대처 및 수습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도 단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폭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9. 11.	폭염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조치 및 수습
초미세먼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기후환경과	2019. 11.	초미세먼지 재난 대비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주택정책과	2014. 5.	다중이용시설 사고 발생시 상황대처 및 수습조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기후환경과	2013. 5.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상황대처 및 수습
육상화물운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통과	2013. 4.	육상화물운송 마비사태에 대한 상황대처 및 수습
도로터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설과	2020. 12..	도로터널 사고에 대한 위기상황 대처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자리경제과	2015. 6.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수습 조치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14. 3.	감염병 발생 시 수습 대응 조치
저수지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자리경제과	2016. 11.	저수지 붕괴사고에 대한 상황대처 및 수습
한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9. 11.	한파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조치 및 수습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09. 6.	풍수해 재난 발생 시 현장조치 및 수습
지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09. 6.	지진 재난 발생시 현장 대응조치 및 수습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4.	대형 화산폭발에 따른 상황대처 및 수습 등 조치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공원녹지과	2015. 11.	산불발생시 상황대처 및 수습 조치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통합본	2022. 6.	매뉴얼 현행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6.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	
	2022. 12.	매뉴얼 현행화	
항공기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정기인사로 인한 비상연락망 정비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인사이동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비상연락망 등 정비	
고속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정기인사로 인한 비상연락망 등 정비	
대규모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매뉴얼 점검 및 정비	
전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인사이동에 따른 행동요령 정비와 비상연락 현행화	
가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비상연락망 등 정비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비상연락망 정비	
가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인사이동, 조직 개편	
문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부서명, 비상연락망 현행화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폭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인사이동	
초미세먼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현행화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현행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조직개편 부서명 반영	
육상화물운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기관 및 연락처 등 현행화	
도로터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비상연락체계 등 현행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부서명 및 담당자 현행화, 비상연락망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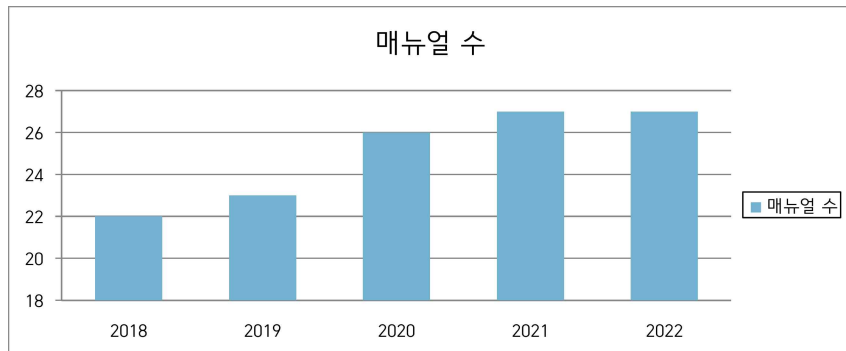
강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현행화	
저수지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8.	현행화	
한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비상연락망 정비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9.	비상연락망 정비	
지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8.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8.	비상연락망 정비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12.	현행화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실시 내역 없음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뉴얼 수	22	23	26	27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36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북부노인복지관 개관(2018. 1. 1.)에 따라 기존 조례의 별표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 중 분관을 제1분관으로 변경하고 제2분관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함(안 별표).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노인장애인과(전화 : 042-608-6773, FAX : 042-608-3833,
E-mail : jully9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송유정(전화 :
042-608-67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본 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40번길 80 (읍내동)
제1분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노인복지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로22번길 5 (신대동)
제2분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부노인복지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681번길 6 (덕암동)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여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여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에 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 나. 국내여비(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에 대한 준용 예외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제1호).
 - 다.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신설함(안 제6조).
 - 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8호).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총무과(전화 : 042-608-6544, FAX : 042-608-3821, E-mail : jjy0311@korea.kr)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전화 : 042-608-65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을 “제8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를 “중 “”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가산징수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여비규정 제31조제1항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삭 제>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준용) ----- ----- ----- -----
1. 여비규정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 제8조의2제5항-----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	8. ----- 중 ----- ----- ----- ----- ----- ----- -----

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신 설>

제6조(가산징수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여비규정

제31조제1항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만” 표기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면서 적용 대상 나이를 통일하고, 일부 미비한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표시 삭제함(안 제2조, 안 제16조).
 - 나. 청년시설 입주 대상자 나이를 용어에 정의한 “청년” 나이와 동일하게 통일함(안 제16조).
 - 다. 용어의 약칭 사용 방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13조, 안 제14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복지정책과(전화 : 042-608-4593, FAX : 042-608-3832,
E-mail : forsyk@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담당자 (전화 : 042-608-45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각각 “청년네트워크”로 한다.

제14조 중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청년네트워크”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청년”이란 <u>만 18세 이상 39세 이하</u>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연령의 범위는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1. ----- <u>18세 이상 39세 이하</u>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생략)	제13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현행과 같음)
② <u>청년정책네트워크</u> 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u>청년네트워크</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u>청년정책네트워크</u> 는 민·관 협치의 파트너로서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u>청년네트워크</u> ----- -----.
제14조(수당과 여비의 지급) 구청장은 제8조, 제9조,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u>청년정책네트워크</u> 활동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의 지급) ---- ----- ----- ----- <u>청년네트워크</u> ----- ----- -----.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 및 청년단체
 2. (생략)
 ⑤ (생략)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18세 이상 39세 이하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이보영(전화 : 042-608-47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만” 표기된 문구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가. 만 65세를 65세로 용어를 정비하고,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연령을 한정 한 내용에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 042-608-4793 FAX : 042-608-38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별로 참여 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하 “구”라 한다)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 65세 ----- ----- . 다만, 중앙부처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별로 참여 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37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일부개정 2023. 1. 1.)에 따라 제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현행규칙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 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표현을 일부 정비함(안 제3조, 제8조, 제9조).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총무과(전화 : 042-608-6541, FAX : 042-608-3821, E-mail : ssm4879@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전화 : 042-608-65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으로, “행정안전국장 및 총무과장”을 “회계업무 담당국장 및 회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22조제2항”을 “훈령 제12조제2항”으로, “기획홍보실장”을 “예산업무 담당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규칙 제49조제2항”을 “훈령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77조”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을 “훈령 제105조제1항”으로, “자로”를 “사람

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재무회계규칙”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생략)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2. (생략) 3. 과오납금의 반환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u>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u>
제6조(재정사항의 협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제6조(재정사항의 협의) ①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위임범위에 따라 본청은 행정안전국장 및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고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 4. (생략)

② 규칙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지출 절차의 예외) 규칙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를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제작 중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것으로 정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

다) 제12조제1항-----

-----회계업무담당국장 및 회계업무담당과장-----

1. ~ 4. (현행과 같음)

② 훈령 제12조제2항-----

-----예산업무담당실장-----

제7조(지출 절차의 예외) 훈령 제32조제2항-----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 사람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사람으로-----

② (현행과 같음)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37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평생학습협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글자)
 - 가.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 나.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 다. 평생학습협의회 회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
 - 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명칭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17조 부터 제18조의2까지, 안 제21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평생학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64 (신탄진동) 평생학습과(전화 : 042-608-6492, FAX : 042-608-3860, E-mail : jjji0531@korea.kr)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과 담당자 조현명(전화 : 042-608-64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평생학습센터”란”을 ““평생학습관”이란”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를 “당연직 위원은 대덕구 평생학습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로 한다.

제10조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의 제목 “평생학습센터 등 운영”을 “평생학습관 등 운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를 “(평생학습관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평생학습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평생학습관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학습센터는”을 “평생학습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평생학습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을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생학습시설을”을 “평생학습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학습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평생학습센터”란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 6. (생 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평생학습관</u> ”이란 ----- ----- ----- ----- ----- 4. ~ 6. (현행과 같음)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2. (생 략) 3. <u>평생학습센터</u>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생 략)	제7조(협의회의 기능) ----- -----. 1. 2. (현행과 같음) 3. <u>평생학습관</u> ----- ----- 4.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당연직</u> 위원은 <u>대덕구 평생학습원장이 되고</u> , 위촉직 위원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u> 되, ----- -----.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촉
 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11조(협회의 회의) (생략)
<신설>

제3장 평생학습센터 등 운영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
 -----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제10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
 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
 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제11조(협회의 회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운영
 제17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
 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
 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
 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
 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
 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
 능을 수행한다.

1. ~ 5. (생략)
6.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에 대
 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생략)

제18조의2(동 평생학습시설의 운
 영) ① 구청장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공공시
 설, 유관기관 또는 기타의 유휴

 ----- 평생학습
 관(이하 “평생학습관”이)-----
 -----.

② ----- 평생학습관-----

 -----.

③ ----- 평생학습관-----

 -----.

제18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
 학습관은 -----
 -----.

1. ~ 5. (현행과 같음)
6. ----- 평생학습센터-----

7.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
 영) ① -----

공간에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를 동 평생학습시설로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1조(수강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평생학습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3. (생략)

----- 평생학습센터

② -----

----- 평생학습센터-----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수강료 반환) -----

--.

1. 평생학습관-----

--

2. 3. (현행과 같음)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옥외광고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소기업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규제 개선 건의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며, 타구와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정비함(안 제명)
 - 나. 옥외광고 사무 민간위탁 절차를 표준화하고,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안 제12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6조,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 다.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또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기재함(안 제4조, 안 제11조).
 - 라.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내 타구와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안 별표 1, 안, 별표 3, 안 별표 6).
 - 마. 불필요한 심의 절차 생략 등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13조, 안 제27조).

- 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함(안 제11조의2).
- 사. 기재 방법에 맞지 않게 기재되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안 제14조, 안 제28조의2,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별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11호서식, 안 별지 제13호서식, 안 별지 제14호서식, 안 별지 제15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축과(전화 : 042-608-5181, FAX : 042-608-3843, E-mail : djl97@korea.kr)
-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과 담당자 이동준(전화 : 042-608-51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네온류”를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 ②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예산”을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을 “광고업자를”로,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를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설치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①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 ② 보상 절차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고시”를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하는”을 각각 “공고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건축과장”을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전을 처리해야 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출시”를 “제출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고시”를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현수기, 육교현관”을 “현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시대등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계시대등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시대등 운영을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시대등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⑦ 지정계시대등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제1항 중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을 “교육위탁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시”를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5조제5항”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교육수료필증”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수료필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교육”을 “제2항에 따라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 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제2항 중 “안전도검사를”을 “안전점검을”로,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안전점검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취소하는 등”을 “취소하는 등의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제23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5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5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9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30만원
- 0.5㎡ 이상 1㎡ 미만	35만원
- 1㎡ 이상 2㎡ 미만	40만원
- 2㎡ 이상 3㎡ 미만	48만원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55만원
- 3.5㎡ 이상 4㎡ 미만	65만원
- 4㎡ 이상 4.5㎡ 미만	80만원
- 4.5㎡ 이상 5㎡ 미만	95만원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110만원
- 6㎡ 이상 7㎡ 미만	130만원
- 7㎡ 이상 8㎡ 미만	150만원
- 8㎡ 이상 9㎡ 미만	170만원
- 9㎡ 이상 10㎡ 미만	190만원
4) 면적 10㎡ 이상	20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30만원
- 2㎡ 이상 3㎡ 미만	35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8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210만원
- 25㎡ 이상 30㎡ 미만	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	245만원
- 35㎡ 이상 40㎡ 미만	260만원
- 40㎡ 이상 45㎡ 미만	280만원
- 45㎡ 이상 50㎡ 미만	290만원
5) 면적 50㎡ 이상	300만원+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3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 면적 20㎡ 이상	75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3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 면적 20㎡ 이상	8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100만원 이하)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택시 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5)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 미만	25만원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30만원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35만원
- 연면적 15㎡ 이상	36만원+연면적 1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50만원 미만)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150만원
- 면적 10㎡ 이상	16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10만원

- 1㎡ 이상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29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35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다) 면적 5㎡ 이상	50만원+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4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비교에 따른다.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2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40,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20,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지가용 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5,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파. 입간판	4,000원
하. 벽보(1건)	5,000원
거. 전단(500매마다)	5,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청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m ² 당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	+	+
		8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을 더한 금액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m ² 당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	+	+
		15만원을 더한 금액	20만원을 더한 금액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20천원	30천원	45천원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라) 30장 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 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비교에 따른다.

[별지 제7호의2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제지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3항 관련 서류	수수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참조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내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의3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제지	
위탁기간	. . . ~ . . . (년 월)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생략)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생략)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 ----- ----- ----- -----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등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 ②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생 략)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 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 ②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 ----- 광고업자를 ----- -----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 ③ -----법 제5조의2제4

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생략)

<신설>

⑦ (생략)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출시기, -----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⑥ -----

----- 공고 -----

⑦ -----

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육교 현관(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수탁기관의 선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구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
-----현수기-----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위탁기간을 연장하며, 위탁기간 만료 60일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지정게시대등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징수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납부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 1. ~ 2. (생 략)
-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 2. (생 략)

<신 설>

제29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2

③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
 -----취소하는 등의 경우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
-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개발사업
- 3.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사업

제3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併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

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7. 6., 2021. 5. 4.>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

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

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7. 6., 2021. 5. 4.>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겹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7. 6., 2017. 12. 29., 2022. 12. 6.>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 7. 6., 2022. 12. 6.>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의 적정성 확보 및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수거 보상 대상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지급액을 변경함(안 별표, 안 별지 제1호서식).
 - 지급대상: 현수막, 벽보, 전단지 → 현수막
 - 지급액: 현수막(5m 이상) 2,000원/면 → 1,000원/면
현수막(5m 미만) 1,000원/면 → 500원/면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축과(전화 : 042-608-5181, FAX : 042-608-3843, E-mail : djl97@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과 담당자 이동준(전화 : 042-608-51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제2조 관련)

광고물 종류	규격	단위	지급액(원)	비고
현수막	5m 이상	면	1,000	
	5m 미만	면	5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법유통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			
	주 소					
신청내역	광고물 종류 및 규격		단가(원)	수량	신청액(원)	비고
	현수막	5m 이상	1,000			
		5m 미만	500			
수 거 장 소						
신청계좌	예금주	은행명 및 계좌번호				
신청내역 확 인	광고물 종류 및 규격		수 량	금 액	확 인	
	현수막	5m 이상				
		5m 미만				
<p>「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불법유통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 ----- -----.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①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 절차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37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도서관 이용 주민 편의를 위해 컬러 프린터를 설치·운영함에 따른 합리적인 사용료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컬러 프린터 사용료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1).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도서관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38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5 (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산도서관(전화 : 042-608-5554 FAX : 042-608-3862

E-mail : mj kang101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운영과 담당자 강민지(전화 : 042-608-55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 사용료(제7조 관련)

1. 부대시설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기준액)		비 고
		평일	토·일요일	
다목적홀 (신탄진도서관)	1 회 (4시간)	40,000원	48,000원	
시청각실 (안산도서관)		30,000원	36,000원	
다목적실 (송촌도서관)		30,000원	36,000원	
※ 초과사용료 가산 초과 매시간 당해시설사용료의 25% 가산				

2. 부속설비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기 준 액)	비 고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0,000원	*시설 사용이 하루에 두 번 이상 또는 여러 일에 걸칠 경우 1일을 1회(1개)로 본다.	
조 명 시 설	1 회	10,000원		
무 선 마 이 크	1 개	5,000원		
피 아 노	1 회	10,000원		
냉·난방 시설	신탄진도서관	1 회	70,000원	*초과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5% 가산 (1 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안산·송촌도서관	(4시간)	40,000원	

3. 기 타

구 분	기 준	사 용 료 (기 준 액)	비 고
아 취 설 치	1 건	10,000원	*1일 기준
복 사	A4 1 면	40원	*자동판매키형 복합사무기기는 50원으로 한다.
	B4 1 면	50원	
	A3 1 면	60원	
프린터	A4 1 면(흑백)	50원	
	A4 1 면(컬러)	300원	
팩 스	A4 1 회 (3면)	500원	*추가 1면당 100원
스캐너	A4 1 면	50원	*고화질 1면당 500원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담당자 최영민(전화 : 042-608-68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 만료일(2023. 8. 30.)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존속기한을 2028. 8. 30.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04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 한은 2023년 8월 30일까지로 한 다.	제18조(존속기한) ----- -- 2028년 8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23년 8월 30일”을 “2028년 8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